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6 년 10 월 14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(주)

(영문명) UBS Hana Asset Management Co., Limited

(홈페이지) <http://www.ubs-hana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(여의도동 27-3 번지)

(전 화) 3771-7800

대 표 이 사 : 이원종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이사

(성 명) 최은영 (전 화) 3771-7990

작 성 자 : (직 책) 이사

(성 명) 최은영 (전 화) 3771-799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, 동법 시행령 제 36 조제 2 항제 1 호바목, 같은 항 제 2 호다목, 같은 항 제 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 4 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9 조제 1 항제 15 호에 의거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소송 등의 판결 • 결정

1. 사건의 명칭	수익금지급청구권 확인
2. 원고 • 신청인	하나유비에스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제일호 및 하나유비에스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제이호
3. 판결 • 결정내용	상고 기각 (피상고인: 원고)
4. 판결 • 결정사유	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 4 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
5. 관할법원	대법원
6. 판결 • 결정일자	2014 년 10 월 13 일
7. 확인일자	2014 년 10 월 13 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없음